의안번호	2215943
의 뢰 인	김태호의원
회 답 일	2026.2.24.
추계번호	26C0171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에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전통시장을 추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,168억원, 2029년 254억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,422억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	1,168	-	-	254	-	1,422	284

주: 1) 보건복지부 기시행 사업인 “응급처치 활성화 지원”사업 국고보조율 준용
1.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체 시설 1개소 당 1개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을 가정한 추계 결과로서,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7조의2 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(제1항)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(신설) 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신설) 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(신설) ※ 국가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6조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7조의2 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○	○ 기시행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본 추계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기시행 사업을 준용하여 응급장비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율(50%)을 준용하여 추계함

○ 동법 제16조제2항[1]에 따르면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추계는 현행 응급장비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율(50%)을 준용하여 추계함

- 보건복지부는 2026년 '응급처치 활성화 지원' 사업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전체 소요 금액의 50%인 8억 2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
- 안 제47조의3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비용은 응급장비 구비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

○ 현행 법령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종류 및 개수 등 구비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존 사업을 준용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 자동심장충격기만을 고려함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1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재정지원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❑ 현행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이 응급장비 의무 구비 대상시설이 되고, 각 시설 당 1개의 자동심장충격기(AED)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
○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나,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
- 이때 설치 대수는 현행 유치원과 전통시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참고[2)]
-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설치 대상 시설 수와 시설 1곳당 설치하게 될 응급장비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❑ 추계 첫 해인 2026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, 소모품은 설치 후 3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❑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(신규 설치 AED 수) 개정안에 따른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전통시장 당 설치할 자동심장충격기 수를 곱한 후 기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수를 차감

○ **(설치 시설 수)** 2024년 12월 기준으로 노인복지시설 96,430개소[3)], 장애인복지시설 4,074개소, 전통시장 1,403개소로 총 97,183개소

- 구비 대상 시설 수는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

○ **(시설 당 필요 AED 개수)** 시설 당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
---

2)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·신고 시스템(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) 분류 결과에 따르면,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유치원 1개소 당 평균 1.08대, 전통시장은 평균 1.28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(2023.12월 기준)

3) 2025년 6월 발표

○ **(신규 AED 개수)** 총 신규 설치 AED 수인 101,907대에서 기설치 AED 수(369대)를 차감한 101,538대임
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현행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및 전통시장은 심장자동충격기 자율설치 시설이므로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
- 다만, 전통시장의 경우 기설치 현황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, 심장자동충격기 자율설치 시설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기설치 현황이 실제 설치 개수보다 과소 집계 가능성이 있음[4)]

[표 2]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현황(2024년 기준) 및 신규 설치 대수

(단위: 개, 대)

구분	전체 개소수 (A)	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개수 (B=Ax1)[1)]	기설치 개수[2)] (C)	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개수(B-C)
노인복지시설	96,430	96,430	-	96,430
장애인복지시설	4,074	4,074	-	4,074
전통시장	1,403	1,403	369	1,034
합계	**101,907**	**101,907**	369	**101,538**

주: 1) 자동심장충격기는 시설 당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2) 기설치 현황은 2025년 말 기준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계산

❑ (구비 단가) 조달청 나라장터와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는 230만원,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은 5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[5)]

○ 추계 첫 해인 2026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, 소모품은 설치 후 3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❑ 추계 결과,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,168억원, 2029년 254억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,422억원으로 추계됨

4)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신고되는데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의 경우 각 기관명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아 기관명으로 시설 구분을 식별하기 어려워 전체 시설 수를 파악하기 곤란함

5) 자동심장충격기는 업체와 모델마다 가격이 상이하나, 본 추계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자동심장충격기 가격이 200~240만원(보관함 포함)인 점과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 자동심장충격기 단가가 250만원인 점을 고려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총 재정소요(A)	2,335	-	-	508	-	2,843	569
국고보조율(B)[1]	50%						
추가재정소요(A×B)	1,168	-	-	254	-	1,422	284

주: 1) 보건복지부 기시행 사업인 "응급처치 활성화 지원"사업 국고보조율 준용

1.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체 시설 1개소 당 1개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을 가정한 추계 결과로서,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